

**-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-
제1회 이사회 심의 · 의결안**

2015. 7. 15.



성동문화재단
Seongdong Foundation for Arts & Culture

의안 목록

의안번호	의안	
제 6 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(안)	1
제 7 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취업 규정(안)	27
제 8 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(안)	50
제 9 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(안)	75
제10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보수 규정(안)	94
제11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복리후생 규정(안)	113
제12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(안)	121
제13호	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(안)	136

의안번호	제 6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합리적이고
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근로기준법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6호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이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가짐(안 제6조)
-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함(안 제7조)
- 직원에게 적절한 직책과 업무 부여함(안 제15조)
- 2년 이상 근무 직원은 정기 또는 수시 순환보직 실시(안 제17조)
- 직원의 승진은 결원 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실시(안 제22조)
- 인사관리 적정성을 위해 직원 근무평정 실시하며, 그 결과는 승진·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및 연봉책정에 반영함(안 제26조)
- 직원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직, 면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(안 제27조)
- 휴직자는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,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재단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(안 제34조)
- 재단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둠(안 제39조)
- 직원의 징계는 해당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(안 제52조)
- 직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함(안 제54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은 근속년수 및 직급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며, 직종은 재단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(안 부칙 제2조)

의안번호	제 7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취업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재단 직원의 근무조건 및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7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취업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재단 직원의 근무조건 및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,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(안 제6조)
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, 향응제공 등의 금지(안 제9조)
- 고의, 과실로 인해 재단에 피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(안 제11조)
- 주휴일(일요일), 근로자의 날, 재단출범기념일,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함(안 제20조)
- 휴가는 연차휴가, 공가, 병가, 특별휴가로 구분(안 제22조)
-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부여(안 제23조)
- 직원퇴직사유 발생시 30일전 퇴직의 예고 해야함(안 제46조)
- 직원에 대한 재교육 훈련을 행함(안 제50조)
- 정기, 수시로 직원을 평정하며 인사관리에 반영함(안 제51조)
- 업무상 부상, 질병, 사망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(안 제53조)
- 법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(안 제55조)
-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또는 성희롱 행위 등 금지(안 제61조)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1회 이상 실시(안 제62조)
-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 병행(안 제63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
의안번호	제 8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으로 제정 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8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무기계약근로자의 등급은 “가급”부터 “바급”으로 함(안 제5조)
- 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으며 “라급”이하 정원은 통합 운영(안 제8조)
- 근로자의 정년은 63세로 함(안 제18조)
- 보수는 1년 단위로 2퍼센트씩 가산하여 산정하되, 해당직급의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(안 제40조)
-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(안 제42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공단에서 고용 승계된 사람은 보수 수준을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근속년수는 공단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산정(안 부칙 제2조)

의안번호	제 9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근로기준법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국민연금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호법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계획 작성 후 임용권자의 승인 후 채용(안 제6조)
- 근무연령은 만70세로 함(안 제10조)
- 보수는 당해 연도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가격을 준용하여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(안 제29조)
- 수당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되, 예산 범위에서 조정 지급(안 제30조)
- 재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안전한 조치 강구(안 제47조)
-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」에 따라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금지 및 제한(안 제50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공단에서 고용 승계된 사람은 보수 수준을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(안 부칙 제2조)

의안번호	제 10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보수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근로기준법,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10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보수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은 성동구청장과 체결하며,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함(안 제5조)
-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으로,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책정(안 제17조)
- 승진 시 기본 연봉에 5% 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(안 제18조)
- 기준기본급에 자연증가율과 정책인상률을 합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(안 제19조)
- 수당의 종류, 지급범위, 기타 수당지급은 “별표4”와 같음(안 제20조)
- 근속기간 1년 이상 임직원에 대해 해당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 지급(안 제25조)
- 업무상 부상, 질병, 사망으로 퇴직 시 퇴직금 가산 지급(안 제27조)
- 근속년수는 임명한 날부터 계산하여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일할 계산(안 제29조)
-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가능(안 제30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서에 의한 합의사항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시행(안 부칙 제2조)

의안번호	제 11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복리후생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근로기준법, 국민체육진흥법, 산업재해보상보호법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11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복리후생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 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함(안 제4조)
-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내역으로 복리후생비 지급(안 제7조)
- 임직원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보조(안 제10조)
- 국민 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직원 체육 진흥(안 제11조)
- 임직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보상(안 제13조)
- 제반 복리후생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(안 제14조)

의안번호	제 12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으로 제정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: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
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12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(안)

□ 제정이유

-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름(안 제3조)
- 회계에 관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5조)
-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은 관련 법률에 따름(안 제7조)
-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(안 제9조)
- 예산은 매년 10월말까지 작성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(안 제13조)
- 고정자산의 내용연수, 상각률, 그 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따름(안 제42조)
- 자본은 자본금, 잉여금, 자본조정계정으로 하고 구성항목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름(안 제44조)
-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를 받은 후 3월말까지 제출(안 제51조)
-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(안 제57조)
-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(안 제65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재단과 관련된 사업으로 공단에서 시행한 원인행위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에서 승계함(안 부칙 제2조)

의안번호	제 13 호	의결연월일	2015. 7. 15.
안건구분	의결사항(○), 보고사항()		

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(안)

제 안 자	경영지원팀장
제안연월일	2015년 7월 8일

1. 의결주문: 원안대로 의결한다.
2. 제안이유: 재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기준과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3. 주요골자: 붙임 참조
4. 참고사항
 - 가. 제안근거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합의
 - 라. 기타

의안 제13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(안)

제정이유

- 재단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기준과 절차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(안 제3조)
- 전결사항은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함(안 제4조, 제7조)
- 전결사항이라도 필요시 상위직위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함(안 제5조)
- 정관 및 직제규정상의 순위에 의해 직무대행자 결재(안 제6조)
- 이 규정은 2015. 7. 1. 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